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129
----------	------

2021년 3월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경만선 의원(찬성자 10명)
- 나. 발의일자 : 2021년 2월 1일
- 다.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 라. 상정결과 :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년 3월 3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경만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기
에 서울특별시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
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청년 문화예술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 마련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
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청년 문화예술공간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
 3. 청년 예술인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제정안 개요

- 동 제정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음.

나. 제정의 필요성

- 최근 한국사회에서 청년 세대를 특징짓는 지배적인 키워드는 불안과 좌절, 포기 등의 부정적인 용어들 일색으로 청년문제가 실업문제로 환원되고 청년정책이 일자리 정책으로 수렴되고 있는 상황이며,

‘2020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¹⁾’에서 예술을 전공하면서 어떻게 예술을 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취직하고 예술을 그만둘지를 고민하는 등 대학에서는 예술가로 살아남기 위한 역량 강화보다 취업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화체육관광부 ‘새 예술정책(2018~2022)²⁾’에 따르면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진입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신진예술가 창작활동 확대, 단체 입단 등 예술계 진입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예술가 정기포럼, 장르별 일자리 창출 등을 계획하며, 취업률이 포함된 일률적인 대학평가 체계 개선 및 예술현장 여건을 고려한 예술대학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1) (재)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통권168. 2021.02. p.30.

2) 문화체육관광부. <새 예술정책(2018~2022)>. 새예술정책수립특별전담팀. 2018.

- 서울시는 서울 예술인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창작안전망을 구축하여 예술인들의 창작 활성화와 공정한 예술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2016년 ‘서울 예술인 플랜(문화예술과-2019.’16.10.19.)’을 수립하였고,

당시 서울에는 청년예술인이 타 도시해 비해 많고, 생활자금 뿐 아니라 예술활동 기회조차 없으며, 열정페이로 버티다가 예술활동을 포기하는 반복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

이에 현재 청년예술인을 위한 ‘서울청년예술단 선발운영’, ‘청년예술인 창작지원’, ‘신진 미술인 전시지원’, ‘남산국악당 청년국악인 지원’, ‘국악인턴제 운영’, ‘신진·청년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생활 예술시장>’ 등 6개 사업 중 1개를 제외한 5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 또한, 2019년부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자율예산”이 추진되어 2021년 문화본부에는 4개 사업 2,249백만원이 편성되어 서울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2020-2021년 예술관련 청년자율예산 현황>

연번	연도별	사업명	예산
합계			2,749백만원
1	2020년	문화·예술 중간지대 활동가 양성사업	500백만원
2	2021년	청년예술인이 기획하는 반응형 사업	510백만원
3		문화예술계 내 성평등 및 탈위계 문화 조성	55백만원
4		도시문화 LAB 운영 지원	800백만원
5		예술·기술 융합형 청년전문가 양성	884백만원

그 외 서울디자인재단 등 4개의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청년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술사업은 아래와 같음.

<2021년 서울시 산하기관의 청년 대상 시행 예술사업 현황>

연번	실국명	사업명	예산
1	서울디자인재단	DDP 오픈큐레이팅	1억원
2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68억5천만원
3		청년예술청	1억원
4		청년문화크리에이터	1억4천만원
5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학교 공동강의 공동운영	1백만원
6	서울시설공단	을지로 아프리에 갤러리 기획전시	비예산
7		신당 창작아케이드	비예산
8		사회적 협동조합 특화공간 운영	비예산
9		사회적기업 소속 예술인 지원	비예산
10		청년 예술가 무한기획 프로젝트	비예산

- 청년문화정책은 청년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그러한 활동의 존중 및 정당한 처우, 그리고 청년층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그것을 추동해 낼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으로

청년층의 문화권 확장은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일이기도 하므로 청년문화정책은 단지 청년문화예술인들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층의 문화적 생성과 교류, 복지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³⁾ 입법·제도상 체계적인 뒷받침을 통

3) 김경례, <청년문화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인문사회21》통권8호 3권,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p.1178.

해 청년 예술인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출하고 문화예술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18.2.28.)하여 시행중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1) 조례안의 구조

- 동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등 총 15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조문체계 현황>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9조	위원회 구성
제2조	정의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	위원회 운영 등
제4조	시장의 책무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3조	위촉 해제
제6조	지원사업	제14조	실태조사
제7조	위탁	제15조	시행규칙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등	부칙	

(2)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①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②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발굴을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적극 지원, ③ 청년 예술인 육성을 위한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하고자 하므로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3)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안 제5조는 시장이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①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창작 공간 설치·조성, ③ 프로그램 개발·보급, ④ 법·제도 개선, ⑤ 자원 조달 등에 대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미 서울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시 예술인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2016년 수립된 ‘서울예술인 플랜’ 이후의 5개년 계획인 ‘서울예술인플랜 2.0’ 수립을 위해 연구·조사하고 있는 바, 문화예술

계 안에서도 아직 주류화되지 못한 청년문화예술이 지닌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제대로 주목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코로나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술생태계 자체의 변화와 발전이 가능한 긴 안목의 실현가능한 정책들이 계획되어야 할 것임.

(3) 서울특별시 청년예술자문위원회에 관한 규정 (안 제8조에서 안 제13조까지)

- 안 제8조는 시장이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청년예술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자문 받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규정한 것임.

-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청년 예술인 관련 위원회는 없으나 2020년 서울문화재단에서 청년 예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총 32회 운영하여 178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했었음.

<2020년 청년 활동 모색과 목소리를 담은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운영>

구분	내용	횟수	참여인원
현장인터뷰	현장예술인 대상 심층 인터뷰	6	6
집담회	‘예술인 작업 및 작품’에 대한 그룹 인터뷰	3	19
라운드테이블	<미래를 여는 예술문> 제작을 위한 테이블	11	76
미니포럼	<포스트 예술대학 만들기 공론장>을 위한 포럼	6	71
연구릴레이	청년예술 관련 연구자의 릴레이 글 연재	6	6

이에 ‘청년예술자문위원회’와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없으므로 설치 가능하며, 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지고 있어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이 나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서 견제와 균형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규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라. 종합 의견

- 동 제정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음.
- 문화예술 분야는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문화예술이 지니는 시장실패의 한계점 등으로 인해 재원의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지 못하고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와 불황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어려운 상황임.

- 이 중 청년문화정책은 문화예술 영역에서 조차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청년 예술인 개인의 창작활동 지원이나 인력 양성, 행사 중심의 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청년문화 활성화의 기반조성이나 네트워크 구성, 교류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시스템 개발, 청년 문화사업의 지속성 확보 등 청년 문화 환경권 조성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⁴⁾.

- 서울시는 동 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서울예술인플랜 2.0’ 수립시 문화예술계 안에서도 아직 주류화되지 못한 청년문화예술이 지닌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제대로 주목하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술생태계 자체의 변화와 발전이 가능한 긴 안목의 실현가능한 정책들이 계획되어야 할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지영	02-2180-8115

4) 김경례, <청년문화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인문사회21》통권8호 3권,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p.1187.

의안번호
2129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경만선 의원	2021. 2.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p>○ 조례제정안 주요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 마련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안됨 <p>○ 조례제정안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 마련 등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시책 등 지문을 위한 청년예술지문위원회 관련 규정(안 제8조) -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청년예술인 관련 실태조사 관련 규정(안 제14조) 				
추진경과	○ 2021. 2. 1. 조례안 발의(경만선 의원 대표발의)				
부 서 검 토 의 건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특이사항 없음(부서의견 사전수렴)				
대응방안	○ 별도 대응내용 없음(부서의견 사전수렴)				
상 임 위 처 리 결 과					
향 후 계 획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팀장	홍우석(☎2133-2552)	담당	양송희(☎2133-2554)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만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29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1일
발 의 자 : 경만선 의원(1명)
찬 성 자 : 김춘례, 김태호, 노승재,
문병훈, 안광석, 오한아,
유 용, 임만균, 최영주,
황규복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에 서울특별시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청년 문화예술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 마련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를 정착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 나.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청년 문화예술공간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
 3. 청년 예술인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 다.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라.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의 범위는 「청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발굴을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
3. 청년 예술인의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법·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

우에는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
2. 청년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전시 지원사업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5.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사업
6.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위탁)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년예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정책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청년 문화예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년 문화예술 관련 부서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위원회 회의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실태조사)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1020200000010
------	------------------

비용추계서

요청인 : 경만선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민향식 팀장 노이안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2.02	
회신일 : 직접입력	내용문의 : 010-2326-1900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목 차

- I. 비용추계 요약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4조(실태조사)에 따라 비용 발생
- ※ 단, 같은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 제2호, 제3호, 제5호의 경우, 해당사업을 서울시 문화본부(서울문화재단)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대상 아님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실태조사(안 제14조)

나. 전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다. 추계기간

- 5년(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라. 방법

- 실태조사 비용은 한국문화원연합회(2019) 「2019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용역」 사업비를 준용하여 산출
-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참석수당 지급 대상은 12명이고,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 제6조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제1호) 및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제4호)은 서울시 문화본부(서울문화재단) 2021년 4차산업 혁명시대 예술·기술 융합형 청년전문가 양성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5,002,000천원(연평균 1,000,4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지원사업(제6조 제1호, 제4호)	984,000	984,000	984,000	984,000	984,000	4,920,000
	위원회 운영 (제11조)	11,400	11,400	11,400	11,400	11,400	57,000
	실태조사 (제14조)	25,000	-	-	-	-	25,000
	소계(b)	1,020,400	995,400	995,400	995,400	995,400	5,002,000
□ 총 비용(b-a)		1,020,400	995,400	995,400	995,400	995,400	5,002,000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예산분석팀장 민향식

분석관(주무관) 노이안

☎ 010-2326-1900

e-mail : 78901@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지원사업(안 제6조 제1호, 제4호)
- 위원회 운영(안 제11조)
- 실태조사(안 제14조)

2. 세부추계내역

가. 5년간 비용 ≍ 5,002,000천원

- 연간비용 ≍ 1,000,400천원

나. 청년문화예술 교육지원 및 일자리 연계 사업비 ≍ 4,920,000천원

- 5년간 교육지원 및 일자리 연계 사업비 = $\sum_{i=1}^5 (\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 ~ 2025년)

- 연간비용 ≍ 984,000천원

※ 서울시 문화본부(서울문화재단) 2021년 4차산업혁명시대 예술·기술 융합형 청년
전문가 양성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산정

다. 위원회 운영 ≍ 57,000천원

- 5년간 위원회 운영비용 = $\sum_{i=1}^5 (\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 ~ 2025년)

- 연간비용 ≍ 참석수당 + 위원회 운영경비

$$= (200\text{천원} \times 12\text{명} \times 4\text{회}) + (30\text{천원} \times 15\text{명} \times 4\text{회}) = 11,400\text{천원}$$

※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총 15명으로 구성하되 그 중 참석수당 지급 대상은
12명이고,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라. 실태조사 ≍ 25,000천원

- 5년간 실태조사 비용 = $\sum_{i=1}^5 (\text{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

- 비용 ≙ 25,000천원 × 1회 = 25,000천원

※ 한국문화원연합회(2019) 「2019 지방문화원 실태조사 용역」 사업비 25,000천원을
준용하였으며 5년마다 실시